

창업교육센터 규정

제정 2012. 9. 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의 창업교육 강화,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설치된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08.12.)

제2조(소재) 센터는 본 대학교 교육혁신처 내에 둔다.(개정 2016. 2. 29, 2017. 8. 24, 2020.08.12., 2023.08.11.)

[제목개정 2020.08.12.]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 2020.08.12.)

1. 대학 창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, 조정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
2. 대학정보공시 항목 내 창업지표 취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학내외 창업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창업분야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5. <삭제 2020.08.12.>
6. <삭제 2020.08.12.>
7. <삭제 2020.08.12.>

[제목개정 2020.08.12.]

제4조(조직)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.)을 둔다.(개정 2020.08.12.)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0.08.12.)

③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 내 자문위원회, 창업전담교수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0.08.12.)

④ 센터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0.08.12.)

제5조 <삭제 2020.08.12.>

제6조 <삭제 2020.08.12.>

제7조(창업교육 운영위원회)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고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0.08.12.)
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그 외의 위원은 유관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 대표 1인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08.12., 2020. 9. 8., 2023.08.11.)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20.08.12.)

③ 회의는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 2020.08.12.)

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취업팀장이 된다.(신설 2020.08.12.)

[제목개정 2020.08.12.]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0.08.12.)

1. 센터 교육프로그램 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정

2. 센터 프로그램 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5. <삭제 2020.08.12.>

[제목개정 2020.08.12.]

제9조(기타) 기타 센터에서 담당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0.08.12.)

[제목개정 2020.08.12.]

제10조 <삭제 2020.08.12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8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8. 11.)

①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